

(2차) 재 결 신 청 서

신 청 인 (사업시행자)	성명또는명칭	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
	주 소	서울시 강북구 도봉로13길 55, 4층(미아동, 충영빌딩)
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	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
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	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141호 (2021. 7. 23.)	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	서울시 강북구 미아동	번지 외 31필지
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	서울시 강북구 미아동	번지 외 4필지
보상액 및 그 내역	금	원
사용하고자하는경우	사용의 방법	없음.
	사용의 기간	없음.
토지 등의 소유자	성명 또는 명칭	외 31인(별첨목록 참조)
	주 소	(등) 서울특별시 종로구
관계인	성명 또는 명칭	외 20건
	주 소	서울특별시 종로구
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예정일		
재결신청의 청구	청 구 일	없음.
	청 구 인 의 성명 또는 명칭	없음.
	청구인의 주소	없음.
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]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.		
2024년 8월 23일		
신 청 인 :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		
조합장 유영국(인)		
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		
구비서류	1. 토지조서 또는 물건의 조서 2. 협의경위서 3. 사업계획서 4.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5. 기타 재결신청관련 첨부서류 일체	수 수 료
		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